# 해피투모로우 쥬디원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상황 해제 시까지)**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아래의「V. 당첨자 발표 및 사전자격검증서류제출, 계약일정」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어 당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된 날짜 및 시간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행조치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소독발판,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51-715-6868)를 실시할 예정이 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은 2023.05.1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사 대표번호 (051-715-6868)로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6.9.**입니다. (청약자격의 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청약자격 : 본 공동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타입별 1인당 1건 청약 가능하며, 타입별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공동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2021.01.01.)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3년 6월 19일(월) 09:00~17:30 | 2023년 6월 26일(월) 16:00 이후 | 2023년 7월 10일(월) ~ 2023년 7월 12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 | 청약홈 홈페이지 개별 확인 | 견본주택 방문 계약 |
| 장 소 | 청약홈<br>(https://www.applyhome.co.kr) | 청약홈<br>(https://www.applyhome.co.kr)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0 경동파크타워 3층 |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 –18366호(2023.5.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69-6번지 외 2필지
■ **대지면적 :** 1,212.7㎡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3~26층 2개동 공동주택 총 110세대(도시형생활주택21세대포함) 중 도시형생활주택 일반분양 2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타입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도시형 생활 주택 | **2023950027** | **01** | 45A | 45.8743 | 19.1110 | 64.9853 | 2.7343 | 67.7196 | 6.8677 | **2** |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원 / 부가세 포함된 금액)

| 타입 | 공급 세대 수 | 동호 구분 | 층구분 | 해당 세대 수 | 분양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50%) | | | | | 잔금(40%) |
|---|---|---|---|---|---|---|---|---|---|---|---|---|---|---|---|---|
| | | | | | | | | | |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입주시 (입주지정 기간 내)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소계 | 계약시 | 2023.7.31 | 2023.09.15 | 2023.11.15 | 2024.01.15 | 2024.03.15 | 2024.05.15 | |
| **45A (도시형)** | 2 | 101동 3호 | 3~5층 | 1 | 53,580,000 | 214,320,000 | - | **267,900,000** | 10,000,000 | 16,790,000 | 26,790,000 | 26,790,000 | 26,790,000 | 26,790,000 | 26,790,000 | 107,160,000 |
| | | | 6~11층 | 1 | 58,840,000 | 235,360,000 | - | **294,200,000** | 10,000,000 | 19,420,000 | 29,420,000 | 29,420,000 | 29,420,000 | 29,420,000 | 29,420,000 | 117,68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안내문, 카탈로그 등의 CG 및 건축허가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환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습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유상옵션 품목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승인의 합산면적과 분양면적의 합산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 위치 지정이나 구획 구분 및 구분 등기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 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장 인근의 개발계획은 부산시, 부산진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의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시행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개인신용등급, 다세대 계약 등)로 인하여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불가(제한) 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세대는(2세대)는 101동 303호, 101동 903호입니다.

## Ⅱ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9)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1인당 타입별 1건씩 청약신청 가능함(동일인이 동일 타입에 2개 이상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청약신청과 당첨 전부를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되며, 법인은 대행은행 창구에서만 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호수는 청약홈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사업주체는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청약일정 및 장소

<table>
<tr><th>구분</th><th>공급일정</th><th>계약 체결</th><th>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th></tr>
<tr><td>청약일시</td><td>2023년 6월 19일(월)<br>09:00~17:30</td><td rowspan="2">2023년 7월 10일(월) ~ 7월 12일(수)<br><br>해피투모로우 쥬디원 견본주택<br>(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0<br>경동파크타워 3층)</td><td rowspan="2">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br><br>※ 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로는 확인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td></tr>
<tr><td>당첨자 추첨 및 발표일시</td><td>2023년 6월 26일(월) 16:00 이후</td></tr>
<tr><td>장소</td><td colspan="3">청약홈<br>(https://www.applyhome.co.kr)</td></tr>
</table>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 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 접수 불가)

## ■ 청약신청 방식

| 구분 | 내용 |
|---|---|
| **이용안내**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
| **방법 및 절차** |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br>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이체한도 확인) |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금 입금 및 구비서류 지참 후 대행은행 내방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구분 | 청약 신청금 | 내용 |
|---|---|---|
| **모든 타입 공통** | 1,000,000원 |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br>•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은행창구 접수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공급</td><td>본인신청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br>예금인장 또는 환불 본인 받을 서명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 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 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 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법인 신청 시</td><td colspan="3">• 청약신청서(청약통장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br>•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 창구접수는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시티는 지점 방문 접수 불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 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시 | 당첨자 발표 장소 |
|---|---|
| 2023년 6월 26일 16:00 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 | |
|---|---|
| 당첨자 선정 방법 | • 청약홈 또는 대행은행에서 청약 접수한 인원 중 당첨자로 선정 |
| 동.호실 결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
| 기타사항 |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 청약 신청금 환불방법**

| 구분 | 환불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은행(창구)청약자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br>•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 계약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해피투모로우 쥬디원 견본주택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30 경동파크타워 3층 )

※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1차 계약금 / 2차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부산은행 | 101-2084-6510-09 | 우리자산신탁(주), 주택도시보증공사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1차·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계약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ex) 502호를 계약한 홍길동 → 502홍길동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급금액은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 사항 |
|---|---|
| 본인 계약시(공통) |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br>② 계약자 인감도장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br>③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br>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br>⑥ 정부수입인지(모집공고일 이전 발행분 가능) |
| 법인 |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br>② 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br>④ 법인 등기부등본 1통<br>⑤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br>※ 외국 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br>⑥ 정부수입인지(모집공고일 이전 발행분 가능)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시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①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br>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br>④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도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견본주택 내 설치된 모형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타 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구역 및 동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계약 (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의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공급계약서와 최종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 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사업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분양대금의 10%)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전매 당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에서 가능하며, 계약금 완납 이후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양도인, 양수인이 부담한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시(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해당지자체의 승인을 득한 후 전매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검인 후 최종적으로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에 의거 분양권전매 승인신청시 사업주체에 대한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 양수인이 사업주체와 본계약 및 분양 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전매 요청 시 명의도용 전매 등 부동산시장 질서 및 공급질서를 해하는 행위 방지 및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계약자 또는 전매매수인에게 전매매수인의 분양 대금 지급의지 및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판단결과 분양대금 회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매에 부동의 할 수 있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세무,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지며, 기타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Ⅳ 추가 선택품목(무상옵션, 유상옵션) 안내

**■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공고상 타입) | 45A |
|---|---|
| 발코니 확장금액<br>(계약자 부담) | 14,05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상 명시 예정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잔금(80%) |
|---|---|---|---|
| | | 계약시 | 입주시(입주지정 기간 내) |
| **45A** | **14,050,000** | 2,810,000 | 11,240,000 |

##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발코니 확장 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부산은행 | 113-2015-2620-01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상기 계좌의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제품(타사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구조 검토 등에 의해 창호 및 도어사향(제조사, 브랜드 및 난간,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 | 45A |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br>(LG) | 2대 | 거실+침실1 | 4,000,000 |
| 가스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SK Magic) | GRA-BI32D | | 850,000 |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추가선택품목** | 부산은행 | 113-2015-2620-01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체결 후 별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특정일 한해 별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해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대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형태,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등을 정할 수 없으며, 계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 등은 자재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 기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마감자재 및 가구의 형태, 선반 개수, 사이즈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시공으로 인하여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천장, 벽, 바닥)가 시공되지 않으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 수량, 종, 배치 및 설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적용되는 마감자재 및 제공품목에 따라 마감재 사이에 이음부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가는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확정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오니 계약 체결 시 실제 설치 위치 및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단열재 적용범위,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및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텐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는 제외)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품목의 위치 및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 기타 주요사항

###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합니다.
-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사이버견본주택은 2021년 2월 10일 승인된 사업승인(변경)인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세대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모형도, 이미지컷 등에 사용된 입면, 외관, 색채와 본 공급간지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공급간지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인허가 및 심의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 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증감면적이 계약면적의 2% 미만인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64A 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계약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등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m2)x0.3025 또는 형별면적(m2)÷3.3058]
- 견본주택은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수할 수 있습니다.(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보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발코니 면적은 (확장포함)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면적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단위세대의 발코니에는 배수처리를 위한 바닥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확인바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기계식/지상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풍동 실험결과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내,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비는 각각 또는 통합 산정 될 수 있으며, 실입주 후 또는 입주하지 않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환경**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외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인접대지(녹지, 근린공원 등)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인근에는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별도의 방음벽 설치 요구나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구역은 성지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개발사업의 추진 시기 및 주변 개발사업 여건 변화, 해당 교육지원청의 중장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표, 취학예정 학생수의 증감 추이 등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인접한 도로와 기타시설물로 인하여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의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공원과 보행자도로,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본 지구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준공완료시까지 공사 소음, 분진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및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주체와는 관련이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인접한 도로 등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근린생활시설 포함),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간섭, 소음 등) 및 유해시설 등은 주택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한 공원에서 소음, 진동 및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창호 돌출 프레임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2021년 2월 10일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 분양홍보물**

- 각종 홍보·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조경,시설물,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의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승인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모형도 및 각종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 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 단지

**<공통사항>**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치구조 및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보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동 배치 및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세대간 시야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자문,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공용부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부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분리수거함 주변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분리수거함이 인접한 세대에서는 악취, 소음,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또한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해당 공간은 지붕이나 가림막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건물의 단열 마감은 내단열 방식이 기본사항이나 세대 내 일부천장 및 일부 부대시설 등은 외단열 방식으로 시공되므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공용 및 부대시설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개인소유의 지장물, 경작지 등의 통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내용, 모형도, 홍보물 등에 없는 통행로가 주변토지통행권에 의해 개설 될 수 있음.
- 세대별 주변식재 및 경계식재의 높이, 수종이 상이 할수 있음.
- 단지 내 건물 외부 바닥레벨 차이로 인해 세대간 단차 또는 구배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가 면한 도로와의 단차가 있을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음.
- 단지 모형 및 설계도서의 조경계획 및 식재,외부 시설물,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로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도로에 대한 일시 또는 영구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는 입주자 부담임.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내부 표현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공간 및 기본적인 별도시설물을 제공하며, 추후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시설물 설치(내부 인테리어 포함), 운영,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각 동 입면 및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3층 이상 외벽면의 기본마감은 수성페인트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저층부(1~3층) 마감은(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 및 석재뿜칠 마감 적용(101동 전면, 배면: 수성페인크  좌측면: 수성페인트, 우측면: 수성페인트, 102동 정면, 배면: 수성페인트, 좌측면, 우측면: 수성페인트, 근린생활시설: 수성페인트, 주민공동시설: 석재+수성페인트)예정이며, 당 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관 및 색채, 주동 출입구 및 저층부 석재 및 석재뿜칠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부대복리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지붕 및 옥탑에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용 조명, 배기덕트,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음

-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부착되는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1층 단지내 설치될 예정이며, 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차량진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주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어있어 이로 인한 출입구 주변은 혼잡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측면에 위치하여 진출입도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등이 면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는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함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쪽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1층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 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및 추가될 수 있고 설치 위치에 대한 변경요청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의 타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 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인근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에 의해 결정되고 커뮤니티 시설 등의 내부시설물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의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부대복리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운영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해당 공간을 인계할 예정임.(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전기세 등의 관리비는 해당 공간의 관리주체가 부담)
- 부대복리시설에는 태양광발전 패널,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빛은 반사 및 산란에 의해 인근 세대는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상공간에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일부 창호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

**<지반>**

- 측량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대지경계부에 단차 극복을 위한 구조물(옹벽, 조경석 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계실 등 공용설비>**

-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단지로 추후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조경>**

-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수량,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수 있음.
- 저층세대 조경부분의 식재종류는 각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의 배치 및 향에 따라 일부 조경구간 식재의 생육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단위세대

**<공통사항>**

- **본 주택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 실별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 다용도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내·외부에 설비 및 전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급수, 오수 배관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벽,천정면 에 설치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장부위의 가구(주방싱크대,냉장고,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최종마감재(벽지, 타일, 바닥재 등)가 미시공됨.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차장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부대복리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상주차장, 단지 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발생하는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단지내외 도로 단지내 비상차로, 에어컨실외기, 기계전기실 및 급배기구, 주차장(장애인주차장 포함),분리수거함, 전기분전함, 가로등 등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 소음, 해충, 악취, 빛에 의한 눈부심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상부 옥외공간(옥상 등) 점검을 위해 세대 내부를 통한 진입 및 보수작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으로 실 시공시 세대내에 스프링클러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음.
- 각 단위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우수관, 배수관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또는 내부에는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계량기함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에 적용된 홈 네트워크시스템 등 이용시 통화료 이외의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음성인식 스피커 등을 통한 기기제어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함.
- 본 시공시 상판류, 타일류의 이음새 및 타일나누기는 변동될 수 있음.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적용된 주방가구 제조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달로그 및 안내문구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욕실문은 목문틀이 설치되고, 부식방지를 위해 문짝은 ABS수지로 시공되며, 침실문짝과는 재질이 다름.
- 세대 내 가구, 바닥마루재, 타일 등의 자재선정은 분양 후 주요업체의 입찰을 통하여 결정되며, 견본주택 시공자재의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개발 등의 경우 동급이상으로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줄눈채움없이 시공됨
- 거실 아트월 및 화장실 욕실 타일은 에폭시,떠붙임 시공으로 후면공극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은 전시용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기본 제공되는 조명기구는 견본주택에서 해당 품목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 바람.
- 세대내 붙박이장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TV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등은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의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 면적의 차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할 수 없음.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보일러 위치는 세대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다르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외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관리가 요구됨
- 각실 난방 온도제어를 위해 각 층의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는 싱크대하부 및 붙박이장의 사용공간 제약이 있을수 있으며, 연결되는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름.

**<창호>**
- 블록별 창호 설치사양은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된 것으로 추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로 각 실별 창호사이즈는 상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해당공간에 면한 방수턱 확대 시공 등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됨.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발코니확장>**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발코니였던 공간이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벽층간균열로 인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발코니 창호는 층·향에 의한 풍압 등의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이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세대별(실별, 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중샷시, 단열재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조절기, 분전반 등의 사양 및 수량,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도 있음.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유리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기계,난방,전기,설비>**

- 개별난방 방식(가스보일러)이 적용되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됨.)
- 보일러 연도설치로 인해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적법절차에 개별가스보일러 방식으로 계획 되었으며 추후 난방방식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 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살수설비는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에 계획이 됨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방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소방 시설물이 설치 됨.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온도조절기 등은 사양 및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설계 과정에서 일부 미설치 될 수도 있음. (동일한 주택형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외부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되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는 실내 또는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됨.
- 세대 지붕 및 옥상에 태양광발전 패널 및 장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인근 세대에 시야간섭, 눈부심, 조망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천장에 기계환기설비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 세대내 우수입상관, 배수입상관, 선홈통, 드레인 등의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지붕재는 유지보수에 유리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우수선홈통이 각 세대별 옆세대 및 상부세대와 공통 사용됨을 인지하시기 바람.
- 내부벽체는 건식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됨으로 중량물의 설치를 지양하시기 바람.(중량물 벽면 부착시 보강조치 필요함)
- 정문에 문주가 설치되며, 주차차단기가 적용됨.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형은 선택이 불가함.**
-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 주택유형과 유사수준의 마감자재가 적용되며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 주택유형과 유사수준의 마감자재가 적용되며 견본주택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개관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음.
- 실제 견본주택 설치품목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되며, 또한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 저층부 특화마감, 단지내 포장부위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설치 및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사업주체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지붕 마감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조명등(식탁용 조명등 포함)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으며 공급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방화도어 및 일부 도면에 없는 개구부는 소방법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 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소파·침대·식탁 등의 가구와 커튼·침구류·액자 등 소품류, 냉장고·TV·홈시어터 등의 가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연출품목이며, 디스플레이용 조명은 본 시공 시 설치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므로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영상을 볼 수 있음.
  (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쳐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준공 후 수분양자가 추가로 설치한 일체의 건축물(불법건축물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견본주택에 표현되지 않은 가스관, 보일러 선홈통은 본 공사시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홀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다르게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Ⅵ 기타사항

**■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 본 건축물은 대리사무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주)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합니다.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우리자산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우리자산신탁(주)는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금 관리업무, 분양계약 사무 대리 업무인 분양 계약서 날인, 분양계약자 관리를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시행사인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있습니다. 우리자산신탁(주)가 분양계약자에게 직접 이전등기하여 주는 경우에도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시행사인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게 있습니다.
-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대리사무신탁사 우리자산신탁(주)은 시행사의 요청에 의한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만을 담당하며,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 입주(점)지연 등에 따른 제반 의무, 건축물의 하자 보수 의무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르되, 우리자산신탁(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우리자산신탁(주)에서 관리하며,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분양수입금 총액을 대리사무신탁사에게 양도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대출금상환, 이자지급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회사인 우리자산신탁(주)는 수납 분양대금으로 본 사업의 준공 시 까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지급 업무만을 담당하며 기타사항{인.허가, 시공, 준공, 분양(분양광고 내용 포함)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02312023-104-0000100** | **₩14,291,76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부가세 포함된 금액)

| 구분 | 건축 | 전기,소방,통신설비 |
|---|---|---|
| 상호 | ㈜지을엔드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유비스(주) |
| 감리금액 | 737,000,000 | 352,000,000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468-88-00067(180111-0967331) | 440-86-00406(180111-1034402)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허가 및 설계검토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시행자 | 시공사 | 대리사무 수임자 |
|---|---|---|
|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184171-0009555) | 중아건설(주)(180111-0616136) | 우리자산신탁(주)(110111-2003236) |

**■ 견본주택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0, 경동파크타워 3층**

**■ 분양문의: 051) 715-6868**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